

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7월 일

발의자 : 오승철 의원

1. 제안이유

가.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,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, 일본식 표현,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 등을 우리말로 순화하고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행정사무조사’ 및 ‘지방자치법’에 대한 약칭 규정을 신설하여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확보함 (안 제3조, 안 제5조)
- 나.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함 (안 제2조, 제4조, 제5조 등)
- “범위 내” → “범위”, “기타” → “그 밖에”, “한하여” → “한정하여”
 - “~의 규정에 의한” → “~에 따른”, “응하여야” → “따라야”
- 다.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 현행 법체계에 맞도록 자구 및 체계를 정비함 (안 제9조, 안 제12조, 안 제16조 등)
- “1이상” → “1 이상”, “관계기관” → “관계 기관”, “당해위원” → “해당위원”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: 해당없음

5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하남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- ① 하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를 실시한다. 다만,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(이하 “감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3조제1항 중 “1이상”을 “1 이상”으로, “조사”를 “행정사무조사(이하 “조사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조사의 발의는 조사의”를 “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법 제126조”를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126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“1이상”을 “1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단서 중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조사의”를 “조사”로 한다.

3. 하남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

제6조제2항 후단 중 “응하여야”를 “따라야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관계기관”을 “관계 기관”으로, “응하여야”를 “따라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서류제출 또는 출석,”을 “서류제출 요구일, 출석 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49조제5항에 따라”로, 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34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9조의3제3항 중 “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9조제1항에 따라”로, “기타의”를 “그 밖의”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, “기타 필요한”을 “그 밖의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 위원”을 “해당위원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제1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2조에 따른”으로, “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”를 “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“ 이라 한다)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“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“라 한다)와 행정사무조사(이하 “조사“라 한다)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감사) ① 의회는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“라 한다)를 실시한다. 다만,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(이하 “감사위원회“라 한다)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회기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하남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감사) ① 하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“라 한다)는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“라 한다)를 실시한다. 다만,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(이하 “감사위원회“라 한다)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----- ----- 범위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실시한다.

③ ~ ⑥ (생략)

제3조(조사) ① 의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,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~ ⑧ (생략)

제4조(사무보조자) ① (생략)

② 사무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9조의3제3항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2.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남시의 소

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조사) ① -----
--- 1 이상-----

행정사무조사(이하 “조사”라 한다)-----.

② -----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 -----

-----.
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사무보조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그 밖에 -----
-----.
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6조-----

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
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
3. 하남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
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

4. (생략)

5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
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, 출연
법인 등 하남시가 4분의 1이
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.
다만,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
결하는 경우에 하남시의 출자
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, 회
계,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.

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
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
사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
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
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
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
의하여야 한다.

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
무) ① (생략)

② 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
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
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

3. 하남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
에 따른 지방공기업

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
----- 1 이
상 -----.

----- 한정하여 -----.

② ----- 제1항에 따른 -----
----- 조사 -----

-----.

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
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
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.
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가 감사
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
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
(생략)

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
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
속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특별
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
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
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
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요구를 받는 지방자
치단체의 장, 관계공무원 또는
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
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
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
제출 또는 출석, 증언이나 의견
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
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
치단체의 장, 관계공무원 또는
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

-----.

----- 따라야 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 관계 기관-----

----- 따라야 -----

③ -----

----- 서류

제출 요구일, 출석 또는 -----
-----.

④ -----

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9조의3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 ①·② (생략)

③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, 진술을 하기 위하여 감사, 조사위원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 중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「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.

제12조(제척과 회피)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

-----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-----

----- 법 제34조에 따라 -----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3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9조제1항에 따라 -----

----- 그 밖의 -----

----- 범위 -----
----- 그 밖의 필요한 -----
-----.

제12조(제척과 회피) ① -----

----- 한정하

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위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시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15조(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) ①·② (생략)

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징계)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,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「하남시의회 회의규칙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
연 -----
--.

② -----

--- 해당위원-----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제2항에
따라 -----

-----.

제16조(징계) -----
----- 제12조에 따른 ---

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---

-----.